

간접연구경비의 징수 및 관리 운영 지침

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간접연구경비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교외연구비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 집행에 필요한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대상) 간접연구경비는 교외의 연구비 지원기관으로부터 본교 교직원 등에게 지급되는 학술연구비, 연구용역비 및 각종 지원사업에 관하여 특별히 다른 지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의해 징수한다.

- 제3조(징수율) ① 간접연구경비의 징수율은 10%를 원칙으로 한다.
② 정부 및 정부출연기관 등의 지원기관에서 간접연구경비 지원 지침이 별도로 정해진 경우는 이에 따른다.

제4조(관리기관) 간접연구경비는 산학협력단에서 관리한다.

제5조(사용목적) 간접연구경비는 연구진흥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(교외연구비관리규정 18조 참조)

- 제6조(연구촉진장려금 지급) ① 연구촉진을 위하여 간접연구경비 징수액 일부를 해당 교원 및 연구소에 연구촉진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.
② 개인 연구과제인 경우 연구책임 전임교원(세부과제 책임자 포함)에게 간접연구경비 징수액의 20%를 지급한다. 단, 정부 및 정부출연기관에서 지원한 과제에 한하여 적용한다.
③ 연구소 연구과제인 경우 해당 연구소에 간접연구경비 징수액의 30%를 지급하며 연구소장은 연구진흥 목적을 위하여 연구촉진장려금을 직접 집행할 수 있다.
④ 대응자금(Matching Fund)를 교비로 지원하는 교외연구 과제는 연구촉진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.

2005. 5. 11
총장

- 제7조(전문인력 채용) ①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간접연구경비 범위내에서 전담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.
② 전담직원 임용은 산학협력단장이 하며 인건비는 학교에서 정한 임시직 인건비 기준에 준한다.

제8조(결산보고) 매년도 회계 종료 후 30일 이내에 간접연구경비 수입 및 지출 결산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 이 지침은 2005년 3월 1일 이후의 연구관련 신규 사업부터 적용한다.